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항 : ①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 ②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④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및 운용실적 업데이트

□ 효력발생일 : 2026. 3. 27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	------	-----	-----

표지

투자 위험 등급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	-------------------------------	-------------------	-------------------

요약정보

투자 위험 등급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투자비용	제 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3. 16. 기준</u>
		-	<u>2026. 2. 27. 기준</u>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제 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3. 16.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2. 28.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2. 28. 기준</u>
---------------------	------------	---	------------------------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2. 28. 기준</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운용기간 3년 경과 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산정기준 변 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 <신 설>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97.5% VaR 모형 사용) : <u>37.10%</u> - 위험등급 변경 내역 <u>2026. 3. 27. : 운용기간 3년이 경과하여 투자위험등급 분류 체 계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서 "수익률 변동 성" 기준으로 변경</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 재	- -	<u>2026. 3. 16. 기준</u> <u>2026. 2. 27.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및 과세에 관한 사 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 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 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u>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u>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 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 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 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u>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u>

		<p>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p>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3. 16.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3. 1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6. 3. 1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라.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및 운용실 적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의결권 행사 현황 : <u>2024.4 월~2025.3 월 기준</u>
2) 투자목적 및 투 자전략의 이행 현황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기타 주주활동 이행 현황 : <u>2024.7 월~2025.5 월 기준</u>
3) 투자목적의 달 성을 위해 주주활동 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년 12월</u> 까지의 주주활동 내역 기재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2. 28.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 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26기(2023.12.31)</u> <u>제 25기(2022.12.31)</u>	<u>제27기(2024.12.31)</u> <u>제26기(2023.12.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6. 2. 28. 기준</u>